

<p>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정의 개혁 방향 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2.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3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.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5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제 3 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p>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</p> <p>제 4 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5 조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.</p> <p>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 등 개혁방안 구체화 2.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	<p>3.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</p> <p>제 6 조(의견청취 등)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,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 7 조(조사·연구의뢰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·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.</p> <p>제 8 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.</p> <p>제 9 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 10 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수도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수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5조제2항 중 "사용량을 호수로"를 "사용량을 호수(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포함)로"로 하고, 같은조제6항 중 "이를 절상"을 "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(둘째자리 이하는 절사)"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.</p>
---	---